|  |  |  |
| --- | --- | --- |
|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3호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이 2016년 2월 16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비징취안(畢井泉)  2016년 3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생영경영자의 주체 책임을 실행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식품첨가제 포함)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법률•법규•규장 및 식품안전 표준 등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상 감독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는 속지별 담당, 전면적 실시,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면적 실시를 기반으로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식품생산경영자를 무작위로 선출하고 감독검사인원을 무작위로 선정 및 파견하여 타지검사, 상호교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식품생산경영자와 그 종업원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실시하는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에 협조함으로써 감독검사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성급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고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정보를 기록, 취합, 분석하여야 하며 일상 감독검사 조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감독검사 사항  제8조 식품 생산 단계의 감독검사 사항은 식품 생산자의 생산환경•조건, 입고검사 결과,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 제품검사 결과, 저장•보관 및 인도에 대한 통제, 불량품 관리 및 식품 자진회수, 종업원 관리,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등 상황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생산 단계의 감독검사 사항은 전 항에 규정한 감독검사 사항 이외에 생산자의 자격, 제품 라벨 및 설명서, 위탁가공, 생산관리 시스템 등 상황을 포함한다.  제9조 식품 유통 단계의 감독검사 사항은 식품 판매자의 자격, 종업원 겅강관리, 일반 규정의 집행, 금지 규정의 집행, 경영 과정에 대한 통제, 입고검사 결과, 식품 저장•보관, 불안전 식품의 자진회수, 라벨 및 설명서, 특수식품 판매, 수입식품 판매,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식용 농산품 판매 등 상황과 식용 농산품 집중거래시장 운영자, 매장 임대자, 전시회 주최자,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식품 저장•보관 및 운송자 등의 법률의무 이행 상황을 포함한다.  제10조 요식 서비스 단계의 감독검사 사항은 요식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종업원 건강관리, 원자재 통제, 가공제작 과정, 식품첨가제 사용관리 및 공시, 설비•시설의 유지보수와 식기의 세척•소독,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등 상황을 포함한다.  제3장 감독검사 요구  제11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현 인민정부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연도계획에 따라 식품 유형, 기업 규모, 관리 수준, 식품안전 상황, 신용 기록 등 요인에 근거하여 일상 감독검사 연도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안전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상 감독검사 계획은 검사 사항, 검사 방식, 검사 주기와 횟수, 추출검사하는 식품 유형, 추출검사 비율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 계획은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감독검사인원에 대하여 식품안전 법률•법규•규장•표준•전문지식 및 감독검사 요점에 관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실시하는 일상 감독검사는 2명 이상(2명 포함)의 감독검사인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감독검사인원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무작위로 선정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인원은 현장에서 유효한 법집행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 계획을 근거로 일상 감독검사 요점표의 일부 내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검사 내용은 식품약품감독부서가 검사 실시 전에 확정하며 검사인원은 검사 사항을 무단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매년마다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하여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 항목은 현장검사 방식을 위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일반 항목은 서면 검사의 방식을 취한다.  제1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제3자 식품안전 전문기구를 선정하여 자신의 식품생산경영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일상 감독검사의 참고로 삼는 것을 격려한다.  제19조 감독검사인원은 일상 감독검사 요점표와 검사 결과 기록표의 요구에 따라 일상 감독검사 상황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감독검사 결과는 부합, 기본 부합, 불부합 세가지 형식으로 구분한다.  일상 감독검사 결과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장소를 공개하고 관련 질문에 답하며 관련 계약•증표•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생산경영 현장 검사와 샘플추출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감독검사인원의 요구에 따라 현장검사, 질문 및 샘플추출검사 등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 업체가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검사인원은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에 그 원인을 기록하고 관계자를 요청하여 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거나 녹음, 녹화 등 방식으로 기록하여 감독 집법(執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22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가 끝난 후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일상 감독검사 실시 시간, 검사 결과 및 검사인원의 성함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생산경영 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게시한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를 다음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가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 결과가 기본 부합인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기한 부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 업체는 소정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 상황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검사인원은 시정 상황을 추적하고 시정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제24조 일상 감독검사 결과가 불합격이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식품생산경영 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5조 일상 감독검사 과정에서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식품안전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지체없이 효율적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을 해소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와 책임면담을 가질 수 있다.  책임면담 상황 및 시정 상황은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 대상 업체는 이를 거절, 방해,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생산경영 등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 업체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대하여 샘플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관련 계약서•증표•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4) 식품안전 표준 미달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거나 안전 리스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거나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식품, 공구 및 설비를 압류할 수 있다.  (5) 불법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된 장소를 압류할 수 있다.  (6)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치.  제27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입안(立案)하여 조사처리해야 한다.  입안(立案)•조사 기록의 작성 및 사진 촬영, 녹화 등 증거보전 조치는 식품약품 행정처벌 절차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일상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사건의 단서가 본 부서의 직책 또는 관할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지체없이 처리권이 있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9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를 파기, 변조하거나 다음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가지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2,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3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함으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 간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감독검사인원이 검사 대상 장소 또는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거절, 지연, 제한하거나 검사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2) 샘츨 채취, 녹화, 사진 촬영, 복사 등 조사•증거수집 업무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와 관련된 계약서•기록•증표•장부•전자데이터 등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주요책임자, 주관자 또는 관련 업무인력의 부재(不在)를 주장하거나 생산경영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식으로 기만, 오해 유도 또는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5) 폭력, 협박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인원의 법에 따른 직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6) 감독검사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압류한 물품을 은닉, 이동, 매각, 훼손시키는 경우;  (7) 증거를 위조, 은닉, 훼손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8) 감독검사인원의 직무 이행을 방해하는 기타의 경우.  제32조 식품생산경영자의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 간섭하는 행위가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귀정에 위배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3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폭력, 협박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인원의 법에 의거한 직무 이행을 방해하였고 그 행위에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34조 감독검사인원이 일상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과실, 직무유기 행위를 행한 경우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35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소형 식품생산가공공장, 식품 노점상 등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6조 이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이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管理办法**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23号  　　《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管理办法》已于2016年2月16日经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6年5月1日起施行。  局 长 毕井泉  2016年3月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对食品生产经营活动的日常监督检查，落实食品生产经营者主体责任，保证食品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食品（含食品添加剂）生产经营者执行食品安全法律、法规、规章以及食品安全标准等情况实施日常监督检查，适用本办法。  　　第三条 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应当遵循属地负责、全面覆盖、风险管理、信息公开的原则。  　　第四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监督指导全国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工作。  　　省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监督指导本行政区域内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工作。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实施本行政区域内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工作。  　　第五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实施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在全面覆盖的基础上，可以在本行政区域内随机选取食品生产经营者、随机选派监督检查人员实施异地检查、交叉互查。  　　第六条 食品生产经营者及其从业人员应当配合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实施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保障监督检查人员依法履行职责。  　　第七条 省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信息化建设，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记录、汇总、分析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信息，完善日常监督检查措施。  　　食品生产经营者应当按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的要求提供食品生产经营相关数据信息。  第二章 监督检查事项  　　第八条 食品生产环节监督检查事项包括食品生产者的生产环境条件、进货查验结果、生产过程控制、产品检验结果、贮存及交付控制、不合格品管理和食品召回、从业人员管理、食品安全事故处置等情况。  　　除前款规定的监督检查事项外，保健食品生产环节监督检查事项还包括生产者资质、产品标签及说明书、委托加工、生产管理体系等情况。  　　第九条 食品销售环节监督检查事项包括食品销售者资质、从业人员健康管理、一般规定执行、禁止性规定执行、经营过程控制、进货查验结果、食品贮存、不安全食品召回、标签和说明书、特殊食品销售、进口食品销售、食品安全事故处置、食用农产品销售等情况，以及食用农产品集中交易市场开办者、柜台出租者、展销会举办者、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食品贮存及运输者等履行法律义务的情况。  　　第十条 餐饮服务环节监督检查事项包括餐饮服务提供者资质、从业人员健康管理、原料控制、加工制作过程、食品添加剂使用管理及公示、设备设施维护和餐饮具清洗消毒、食品安全事故处置等情况。  第三章 监督检查要求  　　第十一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市、县人民政府食品安全年度监督管理计划，根据食品类别、企业规模、管理水平、食品安全状况、信用档案记录等因素，编制年度日常监督检查计划，实施食品安全风险管理。  　　日常监督检查计划应当包括检查事项、检查方式、检查频次以及抽检食品种类、抽查比例等内容。检查计划应当向社会公开。  　　第十二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根据法律、法规、规章和食品安全国家标准有关食品生产经营者义务的规定，制定日常监督检查要点表。  　　省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需要，对日常监督检查要点表进行细化、补充。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日常监督检查要点表，对食品生产经营者实施日常监督检查。  　　第十三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监督检查人员进行食品安全法律、法规、规章、标准、专业知识以及监督检查要点的培训与考核。  　　第十四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实施日常监督检查，应当由2名以上（含2名）监督检查人员参加。  　　监督检查人员应当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随机选派。  　　监督检查人员应当当场出示有效执法证件。  　　第十五条 根据日常监督检查计划，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随机抽取日常监督检查要点表中的部分内容进行检查，并可以随机进行抽样检验。相关检查内容应当在实施检查前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予以明确，检查人员不得随意更改检查事项。  　　第十六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每年对本行政区域内食品生产经营者的日常监督检查，原则上应当覆盖全部项目。  　　第十七条 实施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对重点项目应当以现场检查方式为主，对一般项目可以采取书面检查的方式。  　　第十八条 鼓励食品生产经营者选择食品安全第三方专业机构对自身的食品生产经营管理体系进行评价，评价结果作为日常监督检查的参考。  　　第十九条 监督检查人员应当按照日常监督检查要点表和检查结果记录表的要求，对日常监督检查情况如实记录，并综合进行判定，确定检查结果。  　　监督检查结果分为符合、基本符合与不符合3种形式。  　　日常监督检查结果应当记入食品生产经营者的食品安全信用档案。  　　第二十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按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的要求，开放食品生产经营场所，回答相关询问，提供相关合同、票据、账簿和其他有关资料，协助生产经营现场检查和抽样检验。  　　第二十一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按照监督检查人员要求，在现场检查、询问和抽样检验等文书上签字或者盖章。  　　被检查单位拒绝在日常监督检查结果记录表上签字或者盖章的，监督检查人员应当在日常监督检查结果记录表上注明原因，并可以邀请有关人员作为见证人签字、盖章，或者采取录音、录像等方式进行记录，作为监督执法的依据。  第二十二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于日常监督检查结束后2个工作日内，向社会公开日常监督检查时间、检查结果和检查人员姓名等信息，并在生产经营场所醒目位置张贴日常监督检查结果记录表。  　　食品生产经营者应当将张贴的日常监督检查结果记录表保持至下次日常监督检查。  　　第二十三条 对日常监督检查结果属于基本符合的食品生产经营者，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就监督检查中发现的问题书面提出限期整改要求。  　　被检查单位应当按期进行整改，并将整改情况报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监督检查人员可以跟踪整改情况，并记录整改结果。  　　第二十四条 日常监督检查结果为不符合，有发生食品安全事故潜在风险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停止食品生产经营活动。  　　第二十五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日常监督检查中发现食品生产经营者存在食品安全隐患，未及时采取有效措施消除的，可以对食品生产经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  　　责任约谈情况和整改情况应当记入食品生产经营者食品安全信用档案。  　　第二十六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实施日常监督检查，有权采取下列措施，被检查单位不得拒绝、阻挠、干涉：  　　（一）进入食品生产经营等场所实施现场检查；  　　（二）对被检查单位生产经营的食品进行抽样检验；  　　（三）查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查封、扣押有证据证明不符合食品安全标准或者有证据证明存在安全隐患以及用于违法生产经营的食品、工具和设备；  　　（五）查封违法从事生产经营活动的场所；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措施。  　　第二十七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日常监督检查中发现食品安全违法行为的，应当进行立案调查处理。  　　立案调查制作的笔录，以及拍照、录像等的证据保全措施，应当符合食品药品行政处罚程序相关规定。  　　第二十八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日常监督检查中发现违法案件线索，对不属于本部门职责或者超出管辖范围的，应当及时移送有权处理的部门；涉嫌构成犯罪的，应当及时移送公安机关。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九条 食品生产经营者撕毁、涂改日常监督检查结果记录表，或者未保持日常监督检查结果记录表至下次日常监督检查的，由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  　　第三十条 食品生产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四条规定的，由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按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的规定进行处理。  　　第三十一条 食品生产经营者有下列拒绝、阻挠、干涉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进行监督检查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按照食品安全法第一百三十三条第一款的规定进行处理：  　　（一）拒绝、拖延、限制监督检查人员进入被检查场所或者区域的，或者限制检查时间的；  　　（二）拒绝或者限制抽取样品、录像、拍照和复印等调查取证工作的；  　　（三）无正当理由不提供或者延迟提供与检查相关的合同、记录、票据、账簿、电子数据等材料的；  　　（四）声称主要负责人、主管人员或者相关工作人员不在岗，或者故意以停止生产经营等方式欺骗、误导、逃避检查的；  　　（五）以暴力、威胁等方法阻碍监督检查人员依法履行职责的；  　　（六）隐藏、转移、变卖、损毁监督检查人员依法查封、扣押的财物的；  　　（七）伪造、隐匿、毁灭证据或者提供虚假证言的；  　　（八）其他妨碍监督检查人员履行职责的。  　　第三十二条 食品生产经营者拒绝、阻挠、干涉监督检查，违反治安管理处罚法有关规定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法移交公安机关处理。  　　第三十三条 食品生产经营者以暴力、威胁等方法阻碍监督检查人员依法履行职责，涉嫌构成犯罪的，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法移交公安机关处理。  　　第三十四条 监督检查人员在日常监督检查中存在失职渎职行为的，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对相关责任人追究行政责任；涉嫌构成犯罪的，依法移交司法机关处理。  第五章 附 则  　　第三十五条 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食品生产加工小作坊、食品摊贩等的日常监督检查，可以参照本办法执行。  　　第三十六条 本办法自2016年5月1日起施行。 |